

전주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12806(본소), 2021나12813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기타(금전)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12806(본소), 2021나12813(반소) 판결
전주지방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0가단32994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변론종결 2022. 6. 22.

판결선고 2022. 8. 31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. 11. 17. 선고 2020가단3299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미리, 판사 김범준, 판사 신태광